

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 
도시·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 
【2021. 6.10.(목) 10:00】

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
(재난관리기금)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도 시 · 교 통 위 원 회

#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(재난관리기금)

##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6월 10일  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년 6월 2일, 강서구청장

2. 제출근거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

3. 기금 조성 규모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0년도 말 조성액	2021년도 조성계획		2021년도 말 조성액	비 고
		수 입	지 출		
재난 관리 기금	2,735,698	1,249,528	2,008,971	1,976,255	당초
		3,249,528	2,008,971	3,976,255	변경

- 2021년도에 조성할 재난관리기금조성 규모는 39억 7,625만 5천원으로 당초계획 19억 7,625만 5천원 대비 20억원(49.7%)이 증가한 규모임

#### 4. 기금운용(수입·지출)계획

##### ○ 기금운용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항	목수	입액기	정액비	교증감
합	계	5,985,226	3,985,226	2,000,000
전	입금	3,189,528	1,189,528	2,000,000
예	치금회수	2,735,698	2,735,698	0
이	자수입	60,000	60,000	0

- 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59억 8,522만 6천원으로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함

##### ○ 기금운용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항	목지	출액기	정액비	교증감
합	계	5,985,226	3,985,226	2,000,000
비	용자성사업비	1,358,875	1,358,875	0
용	자성사업비	50,000	50,000	0
인	력운영비	600,096	600,096	0
예	치금	3,976,255	1,976,255	2,000,000

- 지출은 기정액 대비 20억원 증액하여 총 59억 8,522만 6천원으로 예치금을 20억원 증액하여 운영할 예정임

## 5. 검토 의견
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,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에 근거하여 자금운용하고 있으며,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39억 7,625만 5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제출된 것임
-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의무예치금<sup>1)</sup>을 제외한 전액이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편성되어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,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예비 기금의 확보차원이며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---

1) 의무예치금 : 지자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으로, 평시에는 그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금액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(이하 “의무예치금액”이라 한다)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**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**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른 적립금
2.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 등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의 다음 각 목
  - 가.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
  - 나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)의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사업
  - 다.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라.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
  - 마. 안전문화 활동 육성·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
  - 바.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(단, 유지관리 제외)
  - 사. 하천시설, 빗물펌프장, 배수관, 우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·정비·보수사업
  - 아.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·보수사업
  - 자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, 수당 및 경비차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
  - 카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2.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다음 각 목
  - 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
  - 나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
3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의 다음 각 목
  - 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
-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
  - 다. 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(단, 제설차량 구입,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,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) 및 임차
    - 라. 법 제31조(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)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
  - 4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다음 각 목(개정 2011. 12. 30)
    - 가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   - 나.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
    - 다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
  - 5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의 다음 각 목(개정 2011. 12. 30)
    -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
    -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
    -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
  - 6.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    - 7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
    - 8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    - 9.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
      - 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        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        - 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      - 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    - 10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(이하 “구 금고”라 한다)에 예치·관리한다.(개정 2013. 3. 13)
- 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5조(기금의 용자 등)** ① 제3조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용자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그 밖에 용자금의 한도액·이자율·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6조(기금관리공무원)**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- 1. 기금운용관 : 안전교통국장
  - 2. 기금출납원 : 안전관리과 안전기획담당주사
-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.
  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,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

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특정 성(남성 또는 여성)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 및 기금 운용에 관련 있는 구 소관 부서의 장
2.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3.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안전기획담당주사가 된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
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3. 기금의 결산
4. 기금의 용자대상자 선정
5.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삭제 2007. 5. 9)**

**제11조(준용)** ① 삭제(2020. 5. 19.)

② 삭제(2021. 3. 26.)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